

#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련 2299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18년 2월 26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조례에 인용된 법규의 일부가 폐지 또는 법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되어 해당 규정들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” 등 일부 문구를 변경된 법규명에 맞게 개정함(안 제4조)

#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5호 중 “「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 제4조제8호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”를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”로 하며, 제4조제9호 중 “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”을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 수정안   |
|--|--|---|
| 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</p> <p>1. ~ 4.(생략)</p> <p>5. 「<u>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 제2조에서 정한 2 이상의 산업·경제에 관한 위원회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</p> <p>6. ~ 7.(생략)</p> <p>8. 「<u>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</u>」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9. 「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10. ~ 16.(생략)</p> | <p>제4조(현행과 같음)</p>   | 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</p> <p>1. ~ 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<u>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 제2조에서 정한 2 이상의 산업·경제에 관한 위원회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</p> <p>6. ~ 7.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<u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9.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10. ~ 16.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조(구성) ① ~ ②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,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  | <p>제5조(구성) 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,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| <p>제5조(구성) (개정안과 같음)</p>  |

|  |  |  |
|--|--|--|
| <p>1. ~ 7. (생략)<br/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8. (생략)</p> |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|  |
|--|--|--|

##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「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 제4조제8호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”를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”로 하며, 제4조제9호 중 “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”을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제8호를 제5조제3항제9호로 하고, 제5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</p> <p>1. ~ 4.(생략)</p> <p>5. 「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서 정한 2이상의 산업·경제에 관한 위원회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</p> <p>6. ~ 7.(생략)</p> <p>8.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9.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10. ~ 16.(생략)</p> | 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</p> <p>1. ~ 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서 정한 2이상의 산업·경제에 관한 위원회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</p> <p>6. ~ 7.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9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10. ~ 16.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조(구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,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8. (생략)</p>   | <p>제5조(구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  |